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07

발의연월일: 2020. 8. 7.

발 의 자:진성준·최종윤·진선미

전혜숙 · 신정훈 · 이형석

강병원 · 박상혁 · 김영배

윤준병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친권자에게 자녀의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한 징계권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본래 목적을 잃고 오히려 자녀의 건강 또는 복지를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준에 이르는 경우에는 징계가 아니라 학대행위라 할 수 있음.

「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이 같은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하나, 학대행위자가 종종 민법상 징계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있어, 현행 민법상 징계권 규정에 대한 논란이 있음.

이에 징계권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15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친권자는 자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915條(懲戒權) (생 략)	第915條(懲戒權)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 <신 설></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친권자
	는 자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
	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u>아니 된다.</u>